제29대 국교련 활동 사항 보고

1 제29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 제29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15:00 ~ 18:30

❍ 장　　소: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CNU홀

❍ 참 석 자: 상임회장 외 22명

❍ 안건 토의 및 의결 사항

1. 발제 발표

가. 최인철 국교조 위원장

- 발제 제목 : 교연비 급여화의 당위성과 전략
- 주요 내용 : 국교련과 국교조가 교연비 급여화를 위한 공동 대응팀으로 국교련-국교조 TF를 구성하여 교연비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나. 이경은 경북대 교수회장

- 발제 제목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채용 의무 비율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이 이미 50% 이상이므로, 50% 채용의무 법 개정은 무의미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확대와 지방 산업체의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가 필요함.

2. 안건 토의

가. ‘국가와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 후속 대책

- 상임위원회가 4월 22일 오전에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면담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S10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대한 국교련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 교육부 정책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교련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 및 개진하기로 함.

나. 자율전공 (무전공) 문제

-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이 자율전공과 무전공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2026년도 대학 평가에서 자율전공과 무전공에 할당된 점수가 4점 정도로 큰 의미 없음이 확인되었음. 국교련은 자율전공과 무전공과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로 함.

다. 6월 지방선거 활용 대책

- 국교련은 6월 지방선거를 활용하거나 관여하지 않기로 함.

라. 추진 사업 우선 순위

- 제29대 국교련은 (1) ‘S10 사업’에 대한 대책, (2) 교연비, (3) 교수 수당, (4) 국립대학법 제정 문제를 핵심 정책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국교련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중임

(1) ‘S10 사업’에 대한 대책: ‘S10 사업’은 현재 계획서 공모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교련이 교육부와 국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을 방문, 국교련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2) 교연비와 (3) 교수 수당은 연계되어 있음. 교연비 문제 해결 네 가지 접근 방식

가. 교연비의 수당화: 교연비를 교육 수당(조교수 45만원/월, 부교수 55만원/월, 교수 65만원/월)과 연구 수당(조교수 45만원/월, 부교수 55만원/월, 교수 65만원/월)으로 받음.

나. 교연비 지급 중단시키고, 교수 급여를 공무원 직급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

조교수 = 5급 공무원, 부교수 = 4급 공무원, 교수 = 3급 또는 2급 공무원

다. 교연비의 비과세 요구: 정부가 교연비를 사업성 경비라고 주장하면서 과세하고 있는 모순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비과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

라. 헌법소원 제기: 교연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로 볼 수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음-이장희 창원대 교수회장 제안

○ 교연비 비과세화와 관련된 정보 회람과 국교련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후, 국교련 회장단 회의 단톡방에서 표결을 통하여 다수결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교연비의 수당화는 국교조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함. 교연비가 헌법소원 제기 사인이 된다면, 교수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 제기하기로 함.

(4) 국립대학법 제정 문제: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 면담 때, 교육부가 국립대학법 발의 준비를 시작하면 반드시 국교련과 논의하고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교련 정책위원회에서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발의 준비를 시작한다면, 2021년 전례로 볼 때, 교육부, 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3 주체가 같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마. 기타 안건

- 대학별 자체 감사 제도 : 대학별 자체 감사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움. 직원이 교원을 감사하여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사 규정을 만들어야 함. 전북대의 경우 2013년 교직원의 복무감사를 위한 감사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산학협력단 감사실에서 담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외부로부터 접수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음. 감사반장은 사안에 따라 사무국장(교원), 부서의 부처장(교원)이 맡고 있으며, 감사반에는 교수회 추천 감사(교원) 1명 이상

포함됨.

- 총장이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 국립경국대 총장이 2025년 4월에 교육부 장관명의로 고시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신규 및 변경지정고시(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를 근거로 외부인사를 부총장·단과대학장·대학원장에 임명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경국대 교수회는 이럴 저지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으며, 대학본부는 계속 압력행사를 하고 있음.

  창원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심의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총장이 공포한 적이 있음. 군산대의 경우, 대학평의회 개최를 미루니, 대학본부가 3차례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공문으로 요구한 뒤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공포한 적이 있음. 국중대 총장들이 법적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국교련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해당 대학 교수회에서 요청하면, 국교련(상임위원회)이 항의 방문할 것이며, 기회가 될 때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제29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사진>